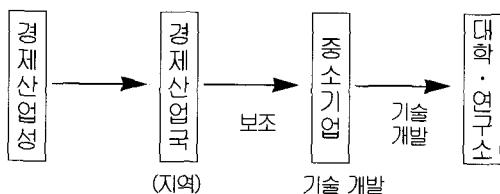




## 일본 중소기업청의 창조기술 연구 개발사업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은 대학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신제품개발·신분야 진출을 도모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2년도 補正豫算(우리나라의 추경예산에 해당)에서 신규지원을 위한 공모를 한 바, 463건이 응모하였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89건이 채택되었다. 예산액은 22.4억엔이다. 대학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업화로 직결하는 실용화 기술개발을 행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신규분야 진출을 꾀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보조대상이 되는 요건은 대학이나 공공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인력 또는 설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며 중소기업에 의해 사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이어야 한다. 보조금액, 보조비율은 1건당 보조금액은 6,000만 엔 이내, 보조비율은 2/3이내이다.

### 경제산업국별 신청 및 채택건수(2002년)

경제산업국	신청건수	채택건수
北海道	49	13
東北	14	3
關東	171	25
中部	27	4
近畿	103	15
中國	37	13
四國	24	5
九州	31	9
沖繩	7	2
계	463	89

### 채택건의 기술분야별 비율(2002년)

기술	비율	기술	비율
제조기술	20(22.5%)	나노, 재료	6(6.7%)
정보통신	17(19.1%)	에너지	3(3.4%)
환경	16(18.8%)	기타	7(7.9%)
생명공학	20(22.5%)	계	89(100.0%)

\* 2003년에는 1건당 보조금액은 100만엔에서 4,500만엔이 하, 보조율은 1/2로 조정되었다.

출처 특허뉴스

## 미국 특허청장, 의회 소위원회에서 특허행정 개혁법안의 통과를 요청

미국 특허청장 James E. Rogan은 4월 3일 의회 법사위원회 산하의 “법원, 인터넷 및 지재권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특허행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펴력하였다. 그는 소위원회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의회에서 지재권 관련하여 중언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미국 상표특허청의 업무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태라면 특허와 상표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심사기간도 급속도로 길어질 것이라고 중언하였다.

1981년 “U.S. News & World Report”라는 잡지에서 그 당시 미국의 특허부여절차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미국의 기술혁신이 낫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의 상황이 그때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 당시 출원된 특허가 평균 22개월 계류중에 있었으며, 7만 5천건의 특허출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는 평균 대기 시간이 2년이 넘고 있으며, 중요한 기술의 경우 3년 내지 5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점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매년 35만건의 새로운 출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계류중인 50만건에 더해

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수수료와 예산 상황하에 서는 특히 계류 기간이 40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히 상표청은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뒤받침하는 수수료체계를 개정하는 법안(H.R. 1561)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USPTO 홈페이지

## 일본최고재판소,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상당한 대가」에 대한 판단

비디오디스크 장치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올림피스 광학공업의 전직 종업원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사내규정을 초과하는 「상당한 대가」를 동 회사에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근무규칙 등에 보상규정이 있어도 특허법이 정한 상당한 대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하고 229만엔의 지급을 명한 1, 2심을 지지하였다. 당초 회사측은 보상금 규정에 의거 21만엔을 지급하였는데 동 종업원은 그에 불복하고 2억엔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측이 정한 근무 규칙이나 보상금 규정 등에 의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대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직무발명에 관해서 사용자 등이 정한 근무규칙 및 그 외 정함에 의해 산정된 대가액이 특허법 35조 3항, 4항 소정의 상당한 대가로서 부족한 경우에 종업원 등은 이 정함에 근거해서 사용자 등이 산출한 액에 구속됨이 없이 동 조항에 의해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대가청구권을 정한 특허법 35조 3항과 4항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법 3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사용자 등이 미리 정한 근무규칙 그 밖의 정함에서 대가의 지불시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판례들은 권리 양도시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고 있었다. 직무발명의 대가를 둘러싼 다른 소송 즉 일아 화학공업의 청색 빌광다이오드(LED), 히타치제작소의 광디스크판독 장치 등 발명자가 고액의 대가를 청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또한 보상금을 끌어올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의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요마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 홍콩, 새 상표포고령(Trademarks Ordinance) 발효

지난 2000년 6월에 발표된 홍콩의 새로운 상표포고령이 올해 4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 동 포고령은 그 동안 관련 상표규칙(Trademark Rules)의 마련과 온라인 검색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동 포고령은 홍콩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재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홍콩 지재권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 포고령은 상표등록절차를 효율화하고 상표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기존에 둘로 나뉘어져 있던 등록절차가 하나의 통합된 등록절차로 바뀌었고, 출원료가 낮추어졌으며, 광고 또는 등록에 따로 부과되던 수수료가 없어졌다. 따라서 하나의 물품에 대해 1류1출원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그 비용은 HK \$ 1300(US \$ 167)가 되고, 다류출원(multi-



class application)의 경우 추가되는 상품류마다 HK \$650(US \$83)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상표의 정의에 있어서도 더 이상 “시각적인 표지”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새 포고령에서는 상표를 “타인의 물품, 서비스와 자신의 물품,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대별 가능한 (capable of being represented) 표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포고령은 소리와 냄새상표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거절의 근거는 절대적 근거와 상대적 근거 둘로 나누어지며 절대적 근거로는 상표가 일반적인 명칭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대중을 속이는 성격 (deceptive)이거나 출원이 악의적 의도(bad faith)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상대적 근거에는 대중의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성이 있거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일 경우 등이다.

출처 Mondaq

##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 IP가치평가 연구회 발족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판의 분쟁해결기관인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는 가치의 산정이 어려운 지적재산(IP)의 평가에 임하기 위해 「IP평가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동 연구회는 법률개정까지는 제안하지 않지만, 지적재산의 평가방법, 분쟁의 형태, 해결에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을 연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며, 지적재산 중에서도 특히 등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발명에 있어 서의 상당한 대가의 결정, 라이센스 실시료의 산출, 담보로서의 IP의 평가, 세무상의 IP 평가의 4

개 테마를 검토한다. 구성원은 대학교수, 법관, 경제산업성, 특허청, 국세청 공무원, 공인회계사, 前 기업 지적재산부 담당자, 은행직원, 변호사, 변리사로 하며 연구성과는 보고서로서 내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 공표한다.

출처 일본공업신문

## 광동성, 특허출원과 취득수 중국 Top, 華爲도 공헌

「남방 일보」 4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02년 발명 특허 신청 상황 분석」에서 작년의 특허 출원수나 취득수에 있어 광동성이 중국에서 Top을 기록하였다. 특히 특허 출원수에서는 3819건에 이르러, 전년대비 49.8% 증가, 출원수의 증가폭은 4년 연속 45%를 넘었다. 그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인 심천시의 華爲技術有限公司는 1003건을 출원, 중국 기업의 출원 수에서는 제일이다. 최근 몇 년간 광동 경제의 고도 성장에 수반해, 광동성의 특허 출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5년부터 특허 출원수와 취득수에서 8년 연속 중국 Top을 유지, 중국 최대의 지적재산권성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광동성에 있어서의 특허 출원이나 취득은 대부분 실용신안이나 의장이고, 산업에 적결하는 것이 적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동성의 공산당 위원회와 정부는 특허 출원이나 취득을 쟁취하는 행정 지도에 주력하여, 출원에 수반하여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취득에 수반하는 절차 번잡화를 막도록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광동성의 특허 출원수는 배증, 중국 전체에서 출원점유율도 1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출처 중국정보국